# 2025년 제1차 인재채용[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은 국토교통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신기술 인증·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토교통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Ⅰ 채용 개요

### ❍ (채용인원) 총 19명

* 기간제(10명) : 선임연구원 2명, 연구원 7명, 무기계약직 1명
* 체험형 청년인턴(9명) : 취업지원대상자 2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1명, 북한이탈주민 1명, 다문화가족 1명, 자립준비청년 1명

### ❍ (채용방식) NCS기반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공개 채용

* 본인의 성별·나이·신체조건·출신학교·지역, 부모의 직업 등 인적사항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

### ❍ (채용분야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직급별 중복 지원 불가(하나의 채용분야·직급에만 지원 가능)

| 구분 | 채용분야[직무] | 채용직급[대상]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
|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 R&D 기획 및 사업관리 | 선임연구원 | 2명 | 전일제 [주40시간] |
| | | 연구원 | 7명 | 전일제 [주40시간] |
| | 행정관리 지원 | 무기계약직 | 1명 | 전일제 [주40시간]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관리 지원 | 인턴 [취업지원대상자] | 2명 | 전일제 [주40시간] |
| | | 인턴 [장애인] | 3명 | 전일제 [주40시간] |
| | | 인턴 [저소득층] | 1명 | 전일제 [주40시간] |
| | | 인턴 [북한이탈주민] | 1명 | 전일제 [주40시간] |
| | | 인턴 [다문화가족] | 1명 | 전일제 [주40시간] |
| | | 인턴 [자립준비청년] | 1명 | 전일제 [주40시간] |

○ (채용분야 직무 소개) 첨부1(직무기술서) 참조

○ (근무조건 및 보수)

| 구분 | 채용분야[직무] | 채용직급 [대상]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근무지 | 보수 [연봉, 1인] |
|---|---|---|---|---|---|---|
|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 R&D 기획 및 사업관리 | 선임연구원 | 전일제 [주40시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경기 안양 | 내부규정에 따름** |
| | | 연구원 | | | | |
| | 행정관리 지원 | 무기계약직 | | | |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관리 지원 | 인턴 [취업지원대상자] | 전일제 [주40시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 월 210만원 |
| | | 인턴 [장애인] | 전일제 [주40시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 |
| | | 인턴 [저소득층] | 전일제 [주40시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
| | | 인턴 [북한이탈주민] | 전일제 [주40시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
| | | 인턴 [다문화가족] | 전일제 [주40시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
| | | 인턴 [자립준비청년] | 전일제 [주40시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

*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년 연장 가능하나, 육아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우리원 「보수규정」, 「보수규칙」,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 등에 따름(단, 연구원 및 무기계약직의 경우 경력인정은 「임용규칙」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5년까지 인정)

○ (자격요건)

| 구분 | 채용분야 [직무] | 채용직급 [대상] | 자격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
|---|---|---|---|
|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 R&D 기획 및 사업관리 | 선임연구원 [전일제]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br>-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br>-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br>- 박사, 기술사 취득자<br>-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br>- 중앙부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구분 | 채용분야<br>[직무] | 채용직급<br>[대상] | 자격요건<br>[접수마감일 기준] |
|---|---|---|---|
| | | 연구원<br>[전일제]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br>- 석사학위 취득자<br>-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br>-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br>-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 행정관리 지원 | 무기계약직<br>[전일제]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br>- 고졸 이상인 자<br>-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관리 지원 | 인턴<br>[취업지원대상자]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br>*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br>-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용일 기준)<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 | 인턴<br>[장애인]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br>*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br>-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b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 | 인턴<br>[저소득층]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br>*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br>-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br>❖「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구분 | 채용분야<br>[직무] | 채용직급<br>[대상] | 자격요건<br>[접수마감일 기준] |
|---|---|---|---|
| | | 인턴<br>[북한이탈주민]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br>*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br>-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br>❖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용일 기준)<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 | 인턴<br>[다문화가족]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br>*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br>-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br>❖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임용일 기준)<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 | 인턴<br>[자립준비청년]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br>*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br>-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br>❖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용일 기준)<br>❖ 임용예정일('25.03.24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 (결격사유)

| 주요내용 |
|---|
| ☞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 |

○ **(가점사항)** 각 항목별 가점 중복 적용(가점 상한 없음)

- 기간제(육아휴직대체_선임연구원, 무기계약직)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34세 이하인 사람(임용일 기준)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기간제(육아휴직대체_연구원)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34세 이하인 사람(임용일 기준)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채용인원이 4명 이상임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고 제3항 적용

- 체험형 청년인턴(취업지원대상자)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임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부여하되 제3항은 미적용

##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

| 구분 | 주요내용 | 가점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br>*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한국사 능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우대사항 적용에 관한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분야(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확인 필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전형별 득점에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그 외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Ⅱ 원서접수

○ (공고기간) ’25.01.24[금] ~ 02.10[월] 11:00

○ (접수기간) ’25.01.31[금] ~ 02.10[월] 11: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kaia.incruit.com)

* 입원지원서 접수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 접수마감일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접수 처리(최종 제출기준)되니, **가급적 마감 하루전까지 제출 요망**

## Ⅲ 전형절차 및 채용 일정

○ (전형절차)

| STEP1 | STEP2 | STEP3 | STEP4 |
|---|---|---|---|
| 채용공고 및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정 |

○ (전형별 일정)

| 구분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합격인원 |
|---|---|---|---|
| 공고 및 접수 | ’25.01.24[금]~02.10[월] 11:00 | - | - |
| 서류전형 | ’25.02.13[목] | ~’25.02.17[월] | 5배수 이내 |
| 면접전형 | ’25.02.20[목] | ~’25.02.24[월] | - |
| 증빙서류 등 접수 및 확인 | ’25.02.25[화]~03.19[수] | - | - |
|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 ~’25.03.20[목] | - | - |
| 최종합격자 발표 | ~’25.03.21[금] | - | - |
| 임용 | ’25.03.24[월] | - | - |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SMS·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 IV 제출서류[최종합격 후보자에 한함]

○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입원지원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 |
|---|---|
| 제출서류 | **[ 공통 ]**<br>○ (전문)학사 이상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고졸자의 경우 학력증명서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등<br><br>**[ 해당자에 한함 ]**<br>○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br>○ 장애인 증명서<br>○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br>○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서<br>○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br>○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에 한함) 1, 2급 인증서<br>○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br>○ 소득금액증명서<br>○ 경력증명서<br>○ 연구개발(논문실적) 및 사업 참여실적 증빙<br>○ 직무관련 자격증에 관한 증빙<br>○ 직무관련 학교 및 직업교육사항에 관한 증빙(이수확인서 등)<br>○ 상기 외 입원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 해당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하나,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자가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V 전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선임연구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서류전형 | 결격사유,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 | 적합/부적합 | 부적합시 탈락 |
| | ❖ 직무분야의 적합성 | 40점 | 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
| | ❖ 기본소양 및 자질 | 30점 | |
| | ❖ 사회성 및 잠재성 | 20점 | |
| |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0점 | |
| | **평가점수 합계** | **100점** | |
| |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 - | -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면접 전형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0점 | 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
|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5점 | |
| | ❖ 조직화합 및 협동심, 성실성 및 청렴성 | 20점 | |
| |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5점 | |
| | ❖ 기본소양 및 인성 | 10점 | |
| | **평가점수 합계** | **100점** | |
| |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 - | - |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 행정관리 지원(청년인턴_보훈,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자립청년)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서류 전형 | 결격사유,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 | 적합/부적합 | 부적합시 탈락 |
| | ❖ 직무 이해도 | 50점 | 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
| | ❖ 진흥원에 대한 이해 | 30점 | |
| | ❖ 사회성 및 잠재성 | 20점 | |
| | **평가점수 합계** | **100점** | |
| |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 - | - |
| 면접 전형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5점 | 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
| |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30점 | |
| | ❖ 기본소양 및 인성 | 20점 | |
| | ❖ 조직화합 및 협동심, 성실성 및 청렴성 | 15점 | |
| | **평가점수 합계** | **100점** | |
| |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 - | - |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VI 공지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본인의 성별·나이·신체조건·출신학교·지역, 부모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인사규정」제30조에 따른 정년(만 61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

○ 전형 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술평균 점수(가점 포함)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정

-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미만(가점 제외)*인 지원자는 탈락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동일득점자 발생시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 및 순번 부여

○ 면접전형 합격자(최종합격 후보자)는 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술평균 점수(가점 포함)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미만(가점 제외)*인 지원자는 탈락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동일득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 후보자 순번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의 고득점 순 ➪ 점수배분이 높은 심사항목의 산술평균 점수의 고득점 순(동점자 발생시 점수배분이 다음으로 높은 심사항목 순으로 적용) ➪ 직전 전형단계의 고득점 순

- 면접전형 결과 순위대로 면접전형 합격 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 및 순번 부여

○ 최종합격 후보자 및 최종합격자의 결격, 채용비리 등에 따른 합격 취소, 임용 포기 및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사자 발생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상위 순위로 최종합격 후보자 추가 선정

○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입원지원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결격사유 확인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채용과정에서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채용 전형별 우리원 감사인(감사부서의 장, 직원, 권한 대리자)이 참관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간 보존

○ 채용 불합격자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recruit@kaia.re.kr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음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031-389-6351, 6432)

# 첨부1 직무기술서

## ❑ R&D 기획 및 사업관리[육아휴직 대체_선임연구원, 연구원]

| 채용분야 | R&D 기획 및 사업관리 | 분류체계 | 대분류<br>중분류<br>소분류<br>세분류 | NCS 미개발 분야로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br>(NCS 유사분류 체계 : 사업관리-프로젝트 관리-산학협력관리) |
|---|---|---|---|---|

| | | |
|---|---|---|
| 주요직무 | ㅇ 국토교통 분야 R&D 기획, 사업관리 등 | |
| 직무 수행내용 | ㅇ (국토교통 분야 R&D 기획)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기술동향 및 시장동향 등), R&D 전략 및 정책 수립(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등), 중대형 연구개발사업 발굴 및 기획 등<br>ㅇ (국토교통 분야 R&D 사업관리)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협약 및 진도관리, 성과관리 등 | |
| 일반요건 | 연령 | 제한 없음 |
| | 성별 | 무관 |
| | 결격사유 | 공고문 참조 |
| 교육요건 | 학력 | 공고문 참조 |
| | 전공(교육) | 직무 관련 전공(교육)<br>* 전공(교육)은 필수 보유사항은 아님 |
| 능력단위 | ㅇ R&D 기획(NCS유사능력단위 : 산학협력 사업기획)<br>ㅇ R&D 사업관리(NCS유사능력단위 : 산학협력 과제관리) | |
| 필요지식 | ㅇ 국토교통 분야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지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활용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등 | |
| 필요기술 | ㅇ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술, 문서 및 보고서 작성 기술, 정보검색・분석 및 정리 기술,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무기기 활용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br>ㅇ 영어 소통능력 및 문서 작성·독해 능력 등 | |
| 직무수행태도 | ㅇ 정확한 업무처리 태도, 협력적 업무 태도,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 지향적 태도,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 및 처리를 위한 성실하고 객관적인 태도,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 태도, 상호 발전적 협상 태도, 적극적인 업무개선 태도, 정책・시장・기술 동향에 대한 적극적 학습태도, 준법 및 윤리적 태도 등 | |
| 관련 자격 | ㅇ 국토교통 분야 자격증(기사, 기술사 등), 연구기획평가사,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경영사 등<br>* 자격사항은 필수 보유사항이 아니며 직무와 관련된 자격임 | |
| 직업기초능력 | ㅇ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및 자원관리, 대인관계, 조직이해, 직업윤리 등 | |
| 참고사이트 | ㅇ NCS 관련 : www.ncs.g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련 : www.kaia.re.kr | |

## ❑ 행정관리 지원[육아휴직대체_무기계약직]

| 채용분야 | 행정관리 지원 | 분류체계 | 대분류 | 02. 경영·회계·사무 |
|---|---|---|---|---|
| | | | 중분류 | - |
| | | | 소분류 | - |
| | | | 세분류 | - |

| | | |
|---|---|---|
| 주요직무 | ㅇ 구성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문서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경비 처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 |
| 직무 수행내용 | ㅇ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하며, 문서의 정리, 보관 등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br>ㅇ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 운영 보조, 회의 후 정리<br>ㅇ 부서에서 사용한 경비내역 및 증빙을 확인하여 회계처리 완료 후 회계부서에 제출<br>ㅇ 구성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모품·비품 관리 등 사무환경 유지 | |
| 일반요건 | 연령 | 제한없음 |
| | 성별 | 무관 |
| | 결격사유 | 공고문 참조 |
| 교육요건 | 학력 | 공고문 참조 |
| | 전공(교육) | 무관 |
| 능력단위 | ㅇ 문서관리,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회의운영·지원, 부서 경비 처리, 사무환경조성, 응대 업무, 보고하기 | |
| 필요지식 | ㅇ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사용법,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사용법,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사용법, 문서 관리 규정, 사무비품 관리방법, 보안규정 | |
| 필요기술 | ㅇ 컴퓨터 활용능력,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데이터 관리능력, 문서분류능력, 문서편철능력, 사무물품 배치능력, 탕비용품의 보관 및 청결유지 능력 | |
| 직무수행태도 | ㅇ 업무규정 및 문서보안 준수를 위한 태도, 주의깊은 관찰력 및 적극적인 경청 태도, 정확한 업무 처리 태도,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력 및 논리적 태도,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감, 청렴성 및 윤리적 태도 | |
| 관련 자격 | ㅇ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br>* 최종학력이 고졸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필수 | |
| 직업기초능력 | ㅇ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및 자원관리, 대인관계, 조직이해, 직업윤리 등 | |
| 참고사이트 | ㅇ NCS 관련 : www.ncs.g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련 : www.kaia.re.kr | |

## ❑ 행정관리 지원[청년인턴_보훈,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자립청년]

| 채용분야 | 행정관리 지원 | 분류체계 | 대분류 | 02. 경영·회계·사무 |
|---|---|---|---|---|
| | | | 중분류 | - |
| | | | 소분류 | - |
| | | | 세분류 | - |

| | | |
|---|---|---|
| 주요직무 | ㅇ 구성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문서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경비 처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 |
| 직무 수행내용 | ㅇ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하며, 문서의 정리, 보관 등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br>ㅇ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 운영 보조, 회의 후 정리<br>ㅇ 부서에서 사용한 경비내역 및 증빙을 확인하여 회계처리 완료 후 회계부서에 제출<br>ㅇ 구성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모품·비품 관리 등 사무환경 유지 | |
| 일반요건 | 연령 | 제한없음 |
| | 성별 | 무관 |
| | 결격사유 | 공고문 참조 |
| 교육요건 | 학력 | 공고문 참조 |
| | 전공(교육) | 무관 |
| 능력단위 | ㅇ 문서관리,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회의운영·지원, 부서 경비 처리, 사무환경조성, 응대 업무, 보고하기 | |
| 필요지식 | ㅇ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사용법,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사용법,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사용법, 문서 관리 규정, 사무비품 관리방법, 보안규정 | |
| 필요기술 | ㅇ 컴퓨터 활용능력,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데이터 관리능력, 문서분류능력, 문서편철능력, 사무물품 배치능력, 탕비용품의 보관 및 청결유지 능력 | |
| 직무수행태도 | ㅇ 업무규정 및 문서보안 준수를 위한 태도, 주의깊은 관찰력 및 적극적인 경청 태도, 정확한 업무 처리 태도,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력 및 논리적 태도,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감, 청렴성 및 윤리적 태도 | |
| 관련 자격 | ㅇ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br>* 자격사항은 필수 보유사항이 아니며 직무와 관련된 자격임 | |
| 직업기초능력 | ㅇ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 및 자원관리, 대인관계, 조직이해, 직업윤리 등 | |
| 참고사이트 | ㅇ NCS 관련 : www.ncs.g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련 : www.kaia.re.kr | |

## 첨부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